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및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5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6.
3.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 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의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난 대응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

현행	개정안
<u><신설></u>	<u>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u>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u>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u>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u>

현행	개정안
	<u>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u> <u>회를 둔다.</u> ④ <u>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u> <u>해병대 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u> <u>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u> <u>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u> <u>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u> <u>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u> <u>환수하여야 한다.</u> ⑤ <u>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u> <u>해병대 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u> <u>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u> <u>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u> <u>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u> <u>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u> <u>할 수 있다.</u> ⑥ <u>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u> <u>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u> <u>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u> <u>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u> <u>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u> <u>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직무수행 과정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 감경·면제

-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 기본법」”이라 함)에는 군인의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군인들은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과정 등에서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따라서 개정안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의 행위가 타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자 함.

-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군인의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고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군인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서, 군인의 직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군인과 유사하게 위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직종인 경찰·소방은
이미 아래와 같은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군인의 직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는 형법상 긴급피난¹⁾ 또는 정당방위²⁾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위해 예방·방지 직무집행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방부는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군인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

□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배상법」³⁾, 「민법」⁴⁾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함. 그러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⁵⁾ 및 개별 특별법(참고자료 참조)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일반적인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미비⁶⁾로 인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

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우리나라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법이 없고 개별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민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⁷⁾. 보상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손실을 입은 당사자는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개정안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이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마련을 통해 군인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50조의2제1항제1호의 괄호 안의 부분은 입법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50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7) 재산상 손실의 경우 위 판례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신체 등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 규정 없이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8)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우리 사법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의나 과실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완전한 무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과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본 조항에서 괄호 안의 문구는 앞부분에서 이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직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50조의2제3항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임. 다만, 신청인의 편의성 및 부대 차원의 신속한 사실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각 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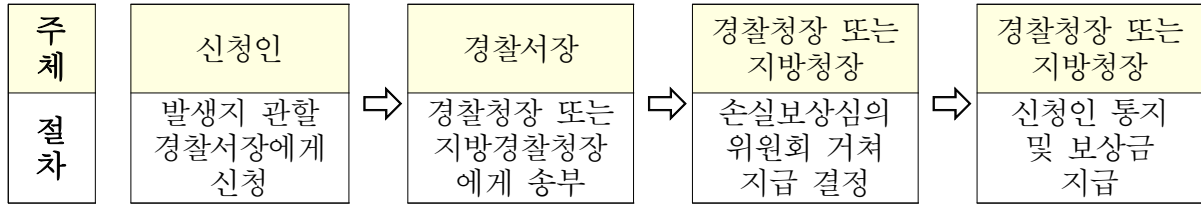
유사한 입법례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그 시행령⁹⁾에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따라서 국방부의 경우에도 손실 발생지 관할 부대장등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부대장이 각 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50조의2제6항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에 있어 생명·신체상의 손실 기준(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사한 입법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동일한 사안에 있어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점¹⁰⁾을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법률 제 11736호, 2013.4.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도 공포 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 규정(14p 표 참조)은 개정안과 중복되며, 동 법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부정수급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징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부칙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개정안 부칙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u> 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보상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17조를 삭제한다.</u>

- 한편, 군사경찰 및 군인과 유사한 업무 특성을 가진 직종인 경찰·소방의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기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손실보상)

-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50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개별법상 보상 규정

1) 「수산업법」 상 손실보상 규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8조 (보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 규정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손실보상 규정

제4조 (위로금)

-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